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독도·해양법연구실	성명	박영길	직급	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발표)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독도·해양법연구센터 운영 (일반사업) (사업기간 : 2023.1.1.~2023.12.31.)					
출장기간	2023. 5. 22. ~ 5. 27.(3박6일)		출장지		미국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5.22(월)	부산(16:30) → 인천(18:40) → 애틀란타(21:34) → 프로비던스(23:59)	항공 이동		DL7888 DL 26 DL2064	
	5.23(화)	08:30~17:00 미 해군대학	컨퍼런스 참석 (기조강연, 세션 1, 2)			
	5.24(수)	08:30~17:00 미 해군대학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기조강연, 세션 3~6)			
	5.25(목)	08:30~16:00 미 해군대학	컨퍼런스 참석 (기조강연, 세션 7, 8)			
		16:00~17:00	공항 이동		차량 이동	
	5.25(목)~2 7(토)	프로비던스(18:55) → 애틀란타(+1 00:30) → 인천(+1 05:15)	항공 이동		DL2659 DL 27	
		인천(08:25) → 부산(09:30)	항공 이동		DL7879	
출장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목적 달성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퍼런스에서 해양경계 미확정 수역에서의 관할권 행사에 관한 국제법원 판결에 대해 분석하고 이를 동중국해 문제에 적용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주제 발표를 하였음 - 여러 해외 전문가들과 동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양관할권 문제에 대해 토론하고 향후 연구협력을 하기로 하는 등 출장목적을 달성 ○ 주요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발표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고, 여러 전문가와 기관에서 연구협력을 요청해 옴 - 베트남 외교아카데미 등과 연구협력 기반 마련 - 미 해군대학 국제법센터로부터 많은 자료를 수집하였음(일부는 KMI 도서관에 기증함)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DZ 관련해서 수행 중인 사업조사보고서에 반영 - 해군 법무실과 결과 공유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기관들과 남중국해/동중국해의 평화적 관리에 관한 공동연구 추진 					
참고 등 특이사항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주최 <input type="checkbox"/> 국제행사 참가 <input type="checkbox"/>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미나, 교육, 훈련 <input type="checkbox"/> 기타 ()
업무①	Cushing Conference 참석 및 발표 / 5월 23일(화) ~ 25일(목)
수행계획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 참석 및 발표 - 기초강연, 세션 1~8 참석 - 세션 6(Great Power Competition and International Law in the Maritime Domain) 발표 · 주제: Limits of Obligation of Self-Restraint under UNCLOS in the East China Sea <input type="checkbox"/> 컨퍼런스 주요 논의 동향 파악 - 최근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 위반 사건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회색지대 전략 - 북극해에서의 200해리 이원 대륙붕 주장 경합 (최근 러시아의 정보제출에 대한 CLCS의 결정 등)
수행결과	<input type="checkbox"/> Cushing 컨퍼런스 진행 특이사항 - 여느 학술회의와 비교할 때 이 컨퍼런스의 가장 큰 특징은 미국 육해공군 및 해안경비대가 모두 참여한다는 점임. 미 해군뿐만 아니라 다른 군에서도 고위 장교들(대령~장군)이 직접 특정 주제에 대해 기초강연 형식으로 발표하고, 청중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짐 - 특히 미 공군의 Spalding 전 준장은 우주에 관한 발표를 하여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현재 정부와 민간이 쏟아올린 수 만개의 위성이 어떻게 큰 문제없이 작동하는지와 우주개발 경쟁과 이와 관련한 법적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였음. 해양과 우주의 차이점을 고려해보면, 현재 우주는 국제법제도가 많이 미발달된 상태이며, 민간 활동이 비교적 제약 없이 행해지는 특징이 있음. 앞으로 군사적 이용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임 - 또한 파괴적 기술과 무력분쟁법에 관한 세션에서는 첨단 수중무인기체들이 어떻게 전투에 활용되는지를 발표하는 등 새로운 무기 기술들을 소개하고 그와 관련한 무력분쟁법에 대해 논의하였음. 이는 항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평시 EEZ 군사활동의 허용범위 논쟁에도 영향 - 인도태평양의 해양안보 세션에서는 안보적 문제를 해양법 및 국제정치적 문제와 결부시킨 발표들이 있었음. 베트남 외교아카데미의 Nguyen은 중국이 구사하는 회색지대전략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어떻게 구사되는지에 대해 매우 분석적인 발표를 하였음. 다만 상대국이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는데, 이는 그만큼 회색지대 전략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음을 의미 <input type="checkbox"/> 본인 발표 요약 - 주제: 유엔해양법협약상 자제의무(obligation of self-restraint)의 한계와 동중국해 - 내용: 유엔해양법협약상 자제의무는 협약 제74조3항과 제83조3항에서 기술. 즉, 두 조항은 당사국이 해양경계가 미확정인 상황에서 "이와 상호협력의 정신으로, 실질적인 잠정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며, 과도적인 기간동안 최종 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약정은 최종적 경계획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다시 말하면, 협약은 2가지 의무, 즉 실질적 잠정약정 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의무와 과도적 기간 동안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후자가 이른바 자제의무임 - 자제의무를 직접적으로 다룬 국제법원 판례가 3개가 있는데, 모두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사건임(2007년 중재재판소, 가이아나/수리남 해양경계획정 사건, 2017년 국제해양법재판소, 가나/코트디부아르 해양경계획정 사건, 2021년 국제사법재판소, 소말리아/케냐 해양경계획정 사건)

수행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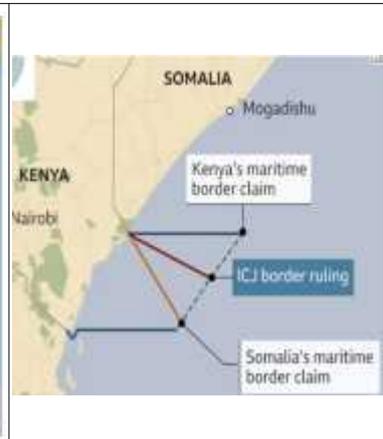
- 그 동안 발표된 많은 논문들이 자제의무의 내용과 범위, 즉 "최종합의에 이르는 것을 위태롭게 하거나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본인은 해양 경계계획과 관련된 분쟁의 발생 시기 및 분쟁지역의 범위(scope of disputed area)을 중점적으로 분석하는 발표를 함
- 분쟁의 시기와 관련해서 협약은 "과도적 기간 동안"(during this transitional period)이라고 기술하였는데, 판례를 인용하면서 과도적 기간은 "해양경계계획 분쟁이 확립된 후의 시기"(the period after the maritime delimitation dispute has been established.)임을 지적하고,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분쟁의 확립 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음. 왜냐하면 분석한 판례에 따라 때 분쟁이 확립되기 전에 행한 활동들(예. 석유가스전의 탐사 및 개발 활동)은 위 자제의무에 관한 해양법협약 위반을 다툼에 있어서 고려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
- 또한 "분쟁지역의 범위"에 관해 분석하였는데, 국제법원에서 판단한 분쟁지역의 범위는 분쟁당사국이 주장하는 경계가 서로 중첩하는 해역임. 예컨대 A국은 등거리선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하고, B국은 이등분각(Angle-bisector)에 따른 경계선을 주장할 때, 분쟁 지역은 중첩하는 해역을 의미함. 그런데 양국이 등거리선/중간선을 주장하더라도 근거가 되는 기점이 다르면 중첩해역이 나타날 수 있음. 분쟁지역의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해역의 바깥 쪽, 즉 어느 일방 연안국의 해역에서 발생한 행위에 대해서는 자제의무에 관한 위 해양법협약 위반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임
- 위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원 판례에 대한 분석을 동중국해 상황에 적용할 때 중요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음
- 중국은 현재 일본이 주장하는 가상의 중간선의 중국 측 해역, 그러나 중간선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18개의 구조물을 건설하여 석유가스전을 개발하고 있음. 그런데 일본 정부는 국내법상 주장하는 해역의 범위가 중간선까지이기 때문에, 중국의 일방적 개발 행위에 대해 외교적 항의만 했을 뿐 그것이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는 못했음
- 반면, 중국은 관할권의 범위를 등거리선/중간선까지 제한하지 않고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최대거리(EEZ의 경우 200해리)까지 권리를 주장하고 있음. 그래서 한국이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운영할 때, 중국은 한국이 자국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유엔해양법협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였음. 이어도는 한국이 주장하는 한-중간 가상중간선에서 명확히 한국 측 수역에 위치한 수중 암초임. 따라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항의는 위에서 살펴본 일본의 중국에 대한 항의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엔해양법협약상 자제의무에 대한 발표는 동중국해에서의 관할권 문제 및 중국의 팽창적 해양정책에 대응함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함



가이아나/수리남 분쟁지역



가나/코트디부아르 분쟁지역



소말리아/케냐 분쟁지역

업무②	전문가 면담 / 05.23.(화)~5.25.(목) 컨퍼런스 중간
수행계획	<p>일본 및 동남아 학자들 면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학자들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복수의 학자들(이름은 비공개) □ 동남아 학자들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복수의 전문가들(이름은 비공개)
수행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학자들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표명하는데 있어 매우 신중한 태도를 견지 - 중국의 동중국해 해양력 팽창에 대해 일본 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 - 지난 해 연말 일련의 안보관련 정책 및 지침 개정과 방위비 증액에서 나타나듯이 일본은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키우고 있으며, 미일 관계가 중요한 축임을 부인할 수 없음 - 지난 4월 말에 해전 관련 뉴포트 매뉴얼이 공개되었는데 이 매뉴얼의 작성에 일본의 학자들이 많이 관여함으로써 일본의 실행 및 견해가 많이 반영되었음 - 학술교류를 통해 동중국해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동남아 학자들 면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남아 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과 우려사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기정 사실화(<i>fait accompli</i>)하고 있다는 점임. 중국은 2010년대 이후 남중국해에서 7개 인공섬을 건설하여 군사기지 등으로 사용하는 등 실질적 지배력을 강화시키고 있음 - 2016년 중재재판소 판정의 이행을 거부하는 중국에 대해 국제법에 기반한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성은 타당 -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은 중국의 회색지대 전략과 해상민병 활용 등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고민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연대와 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중국의 점증하는 영향력으로 인해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
사진	출장 관련 사진

※ 참고자료(경비 세부내역)

- 1) 적용기준 : KMI 여비규정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 중 나등급 적용
- 2) 국외출장 공무상 필요에 의해 로밍 신청(공무통화내역 사후 실비정산)
- 3) 여행자보험, 로밍이용 요금, 제수수료 등 : 실비정산
 - * 현지에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해외로밍비 신청
- 4) 체재비
 - * 주최측에서 5.23~5.25 조식 및 중식 제공 예정 (6식)

출장자	체재비				비고
	숙박비	일 비	식 비	소계	
박영길	-	\$35 X 6일 = \$210	(\$78X6일)-156 = \$312	\$522	식비 6회 차감
합계				\$522	

- 재정정보시스템 내 일비 및 식비 자동 환율 계산 미적용으로 원화 수기 기입
 - * 박영길 - 일비: \$210=284,400원 / 식비: \$312=422,600원
- 환율 : 1\$=1,354.49원 (출장일 5.22 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 내준도노 ■ 내준도노 ■ 내준도노

기준일 : 2023년05월22일 고시회차 : 1회차 고시시간 : 08시23분36초

조회사각 : 2023년07월03일 15시28분11초

통화	현찰				송금		T/C 사실때	외화 수요 파실때	매매 기준율	환가 료율	미화 환산율
	사실 때		파실 때		보낼 때	받을 때					
	환율	Spread	환율	Spread							
<u>미국,USD</u>	1,354.49	1.75	1,307.91	1.75	1,344.20	1,318.20	0.00	1,315.64	1,331.20	6.94373	1.0000